

의안번호	2201569
의 퇴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08.01.
추 계 번호	24C1796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육아종합지원센터)	(제1항)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
 - '24년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, 시·도 단위로 설치된 18개 지원센터와 시·군·구 단위로 설치된 117개 지원센터가 있음¹⁾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1개소 이상의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될 지역 및 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합리적 비용추계가 어려움
- '24년 현재 시·도 단위에는 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, 경기도의 경우 경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북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이 운영중임
 - 시·군·구 단위에서는 전국 226개 시·군·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, 총 11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
 - 다만,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동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이 운영중이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구인 서귀포시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지원센터 외에 추가 지원센터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으나²⁾, 현시점에서 설치될 지역 및 운영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 -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³⁾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지방육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도 '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' 추가로 지방육아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이 경우 해당 센터 신설에 따른 재정소요가 추가될 수 있으나, 센터가 설립될 지역 및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-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'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' 홈페이지 참조

2) '24년 현재 전국 시·군·구 중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으나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의무는 현행법에서 이미 발생한 사항이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보지 않음

3)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1569호) 제안이유

(...)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